



“기회는 공정하게! 희망은 다같이!”

다 함께 잡사는 행복한 농어촌

제공일 : 2011. 11. 14.
제공사 : 농림수산식품부 중자생명산업과
과 장 : 안 영 수
사무관 : 김 중 현
전 화 : 500-1850
쪽 수 : 4P
별첨자료 : 있음(9P)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11년 11월 15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활성화 법적기반 마련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국회통과) -

〈 주 요 내 용 〉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1.10.28 국회통과)

- 동 법률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제정(12.5월까지)
 - 도시농업 및 도시지역 정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도시농업위원회 설치,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 도시농업농장 개설 등
- 도시농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 수립 및 전국도시농업박람회 개최 등(12. 6월)

◇ 도시농업 주요현황(11.10월 기준)

- 도시텃밭 489ha, 도시농업참여자수 378천명, 조례제정 21개 지자체

1.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후속조치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서규용)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10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도시농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 제정된 법률에서는 “도시농업”을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등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산림, 조정 제외)로 농업(農業)이 아닌 취미와 여가 또는 학습과 체험 등의 농사활동으로 정의하였다.

-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포함하였다.

- 주요내용으로는 ▲5년 단위의 종합육성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의 수립 ▲도시농업위원회 설치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와 전문인력 양성 ▲연구 및 기술개발 ▲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공영 및 민영 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및 지원 ▲도시농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정하고 있다.

- * (외국의 입법례) ✓독일 Klein Garten법 ✓영국 Allotment법 ✓일본 시민농원법
- * (외국의 텃밭현황) ✓독일 클라인가르텐(100만 개) ✓영국 Allotment(30만 개) ✓일본 시민농원(3천개) ✓뉴욕 옥상텃밭(600개) ✓몬트리올 도시텃밭(8,200개)

- 향후 공포이후 동법의 시행예정일인 내년 5월까지의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을 마련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도시농업 및 도시지역의 범위 명확화, 도시농업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도시농업 유형의 세부분류, 도시농업지원센터 또는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절차, 공영 및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기준과 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 “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관리 및 처리기준”에 대한 규정을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 농자재의 안전 사용, 사용된 농자재의 회수 및 처리, 도시텃밭의 금지행위,
옥상텃밭의 안전관리 등의 기준 마련

□ 특히, 내년도에는 “도시농업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전국적인 “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하여 도시농업의 저변확대에 적극 노력하여 나갈 계획이다.

2. 2011년 도시농업 실태점검 결과

□ 한편, 도시농업활성화의 기초자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각 시·도
에서 실천하고 있는 도시농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도시
농업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시텃밭 면적은 전년대비 약 3.7배가, 도시농업참여자 수는
약 1.5배가 늘어났으며, 조례제정을 완료한 지방자치단체 수는
21개이며, 현재 13개 지자체가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 조례제정 완료 지자체 : 서울, 대전, 광주, 경기, 서울 종로구·성북구·송파구·
강동구, 부산시 동구, 경기 수원, 경남 창원 등 21개

★ 내년도 제정 추진 : 부산, 전북, 서울 은평구, 경기 부천, 강원 원주 등 13개

	2010년 (A)	2011년 (B)	증△감 (C=B-A)	C/A(%)
○ 도시텃밭 면적(ha)	104	489	385	370
○ 도시농업 참여자수(천명)	153	378	225	147
○ 지방조례 제정(지자체수)	9 (광역시, 기초8)	21 (광역시4, 기초17)	13	144

※ 자료출처 : 도시생활농업 활성화 연구('10.12월, 농식품부) 및 자체점검 자료

○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는 요인은 정부의 도시농업활성방안 발표
('11.6.8), 근거법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제고,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농림수산식품관계자는 “앞으로 정부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통해 도시환경개선, 도시녹화,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붙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정법률('11.10.28. 국회통과)

법률 제 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회 본회의 의결)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농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방향 및 목표
3.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
5. 도시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
6. 도시농업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7.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7조에 따른 도시농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 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도시농업위원회) 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6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3. 제12조에 따른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4. 제20조에 따른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도시농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도시농업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각 1명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도시농업의 유형 등) ① 도시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유형별 세부 분류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주택활용형 도시농업: 주택·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내부·외부, 난간,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주택·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
2. 근린생활권 도시농업: 주택·공동주택 주변의 근린생활권에 위치한 토지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3. 도심형 도시농업: 도심에 있는 고층 건물의 내부·외부,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도심에 있는 고층 건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
4. 농장형·공원형 도시농업: 제14조의 공영도시농업농장이나 제17조의 민영도시농업농장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을 활용한 도시농업
5. 학교교육형 도시농업: 학생들의 학습과 체험을 목적으로 학교의 토지나 건축물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육성 및 지원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의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농업의 공익기능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
2.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3.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
4.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상자, 비닐, 화분 등을 이용하여 흙이나 물을 담아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종자·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5. 그 밖에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농업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농업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연구 및 기술개발)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 관련 연구의 활성화와 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에 관한 수요조사
2.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3. 도시농업 관련 연구 성과 및 개발된 기술의 보급·교류 및 협력
4. 그 밖에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 관련 연구를 하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등) ① 도시농업인들은 도시농업을 함께 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단체(이하 “도시농업공동체”라고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에 들어가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도시농업공동체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도시농업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도시지역에 위치한 공유지 중에서 도시농업에 적합한 토지를 선정하여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도지사는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승인을 받으려면 공영도시농업농장 개설승인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승인권자(이하 “개설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업무규정을 변경하려면 미리 개설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영도시농업농장을 폐쇄하려면 폐쇄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개설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공영도시농업농장 인접지역 토지의 매수·교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영도시농업농장 인접 토지 소유자와 계약에 따라 인접 토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매수나 교환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 또는 교환하려는 경우 매수 또는 교환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제16조(공영도시농업농장 토지의 임대)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도시농업인에게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를 임대받은 도시농업인은 그 토지를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임대의 요건과 기간 및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는 민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과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영도시농업농장은 위치와 면적,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교류 및 협력시책의 수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 사이 또는 도시농업인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사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도시농업 관련 교육 및 실습·체험활동이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에 따른 식생

활 교육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박람회 등의 개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 박람회 또는 도시농업 관련 생활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영도시농업농장, 민영도시농업농장 등의 임대 정보 및 입차 신청
2.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농자재 등의 제공·교환·폐기·회수 등에 관한 정보
3.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 및 신청
4. 도시농업 관련 기술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도시농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농자재 등의 관리 및 처리 기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적인 도시농업을 촉진하고 생활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이하 “관리·처리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제1항에 따른 관리·처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농업인이 제1항에 따른 관리·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정조치의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

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농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영도시농업농장을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한 사람
2.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람

②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